

IV. 금융상품 정의 및 규제체계의 문제점

1. 법률체계 측면

가. 금융법률 체계의 불균형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으로 금융투자회사와 같은 통합금융업 영위의 조직이 나타나기 전 우리나라 금융회사는 보험회사, 은행 및 증권회사, 선물회사 등으로 구분하여 보험업법, 은행법, 증권 및 선물거래법 등 개별업법에 따라 규제되었다. 종전의 금융규제 법률들은 금융분업주의 체제에서 그 적용대상을 해당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취급업무를 열거하여 규정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금융겸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복합금융상품 또는 유사기능 금융상품의 혼재 등 시장상황이 변화하였다. 그에 따라 종전 금융분업시대의 기관중심의 열거주의 규제방식에서 금융상품을 기능별로 분류하고, 그에 적합한 규제를 적용하자는 기능별 규제를 위한 포괄주의 규제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런 필요성을 반영하여 정부에서는 2003년에 기능별 통합금융법률 체계를 검토하였으나, 개별금융법률간 현격한 규제차이의 존재와 급격한 변화로 인한 시장충격 등을 고려하여 우선은 자본시장관련 법률들을 통합하는 부분적 통합을 이루게 된 것이다. 즉, 자본시장통합법은 부분통합금융법으로 볼 수 있다.

부분통합금융법의 사례는 2006년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2002년 홍콩과 2001년 싱가포르의 증권선물개혁법 등이 있다. 부분통합금융법 체계인 일본, 홍콩 및 싱가포르 모두 보험상품의 적용배제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영국의 금융법률 통합과정은 1986년 금융서비스법 제정으로 부분통합금융법 체계로 일단 전환했으나,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FSMA)을 제정함으로써 통합금융법체계로 신속히 전환한 바 있다. 과거 영국의 금융서비스법은 부분통합금융법으로 적용대상을 유가증권과 파생상품, 장기보험계약, 그리고 집합투자 등 '투자성'이 강한 '투자상품' 혹은 '자본시장상품'으로 정의하여 생명보험의 투자성상품을 포함하였으나, 규제상 구분의 문제, 규제원칙의 불균등성 문제 및 업무영역의 불확실성 등으로 2000년 완전금융통합법 체계로 전환하였다.

자본시장통합법은 부분통합금융법이면서 투자성 보험상품 일부를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는 체계이다. 이는 일본과 홍콩 및 싱가포르 등 부분통합금융법 체계들이 보험상품의 적용제외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부분통합금융법 체계인 자본시장통합법이 그 적용대상을 투자성을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은 다른 금융법률의 적용대상 구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즉, 자본시장통합법상의 투자성 기준이 인정되는 모든 보험상품과 은행상품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하게 됨에 따라 기존 법률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는 보험 및 은행상품에 대한 이중규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열거주의 규제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자본시장통합법이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주의 체계로 전환한 것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금융상품의 분류체계를 업별 특성을 균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상대적으로 열거주의가 유지되고 있는 보험과 은행상품도 포괄주의로 전환하여 금융상품이 동일한 조건하에서 분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죄형법정주의 측면에서도 포괄적 정의로 규제대상의 범위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일반인이 위반하는 경우 제재하겠다는 것은 규제중심이지 소비자중심이지 아닌 것으로 위협적이다. 이런 점에서 초안의 포괄주의에서 포괄적 정의와 해당금융상품을 열거하는 한정적 열거주의를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자본시장통합법이 부분통합금융법이면서 보험업법과 은행법의 열거대상 금융상품을 명백하게 적용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은 한정적 열거주의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열거되지 않으면서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적 정의에 해당하는 투자성이 있는 보험 및 은행상품은 여전히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하게 되는 불합리가 존재한다. 모든 투자성 보험 및 은행상품을 금융투자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상품의 특성이 위험전가라고 해서 위험을 전가하는 모든 금융상품은 보험상품이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적 정의에 상품분류기준으로 제시한 투자성은 금융투자상품의 대표적 속성일 뿐 금융상품을 분류하는 유일한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

금융상품의 분류를 한가지 기준으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적 적용제

외, 경영 및 부수업무에의 추가 등 보충 또는 보완적 분류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나. 유사금융법률 체계의 불균형

유사금융·보험업의 범위는 정의에 따라 광범위하나 우체국금융·보험과 농협, 수협, 신협 등의 협동조합조직, 새마을금고에 의한 금융·보험업만을 대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능적으로 금융상품을 취급하면서 금융회사와 다른 규제를 받는 유사금융상품은 해당금융상품을 규제하는 법률에서의 명시적 적용제외 또는 명시적 포함 여부와 해당유사금융기관의 업무취급에서 해당금융상품을 규제하는 법률의 적용배제 여부에 따라 규제법률이 다를 수 있고 규제차익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은행상품의 규제법률인 은행법 제2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외의 모든 법인을 말하고, 제5조에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은행업무와 은행상품에 대해서는 은행법의 규제를 적용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유사금융기관의 설립 및 규제 법률에서도 은행법의 적용을 규정하고 있어 은행상품에 대한 동일기능 동일 규제원칙은 유지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자본시장통합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기능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인 한 동일규제를 위하여 자본시장통합법의 적용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금융투자회사가 아니더라도 기능적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취급하는 자는 자본시장통합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체계이고, 유사금융기관 뿐 아니라 은행과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자본시장통합법의 적용배제를 은행법이나 보험업법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보험상품의 경우에는 은행과 금융투자상품과는 조금 다른 규제체계가 적용되고 있다. 기능적으로 보험상품에 해당하는 공제상품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어 동일기능 동일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우체국보험의 경우에는 특별히 은행법이나 보험업법의 적용배제 조항이 없으면서도 시행주체가 정부라는 특성 때문에 은행법과 보험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사회보험도 보험규제대상으로 장기보험의 한 종
 목으로 열거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규제차익 방지를 위하여 동일기능 동일
 규제원칙을 도입한다면 정부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공정경쟁차원에서도 민간
 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³³⁾.

<표 IV-1> 유사금융기관의 은행법 및 보험업법 적용 현황

구 분	은행법 적용여부	보험업법 적용여부
우체국금융업무 (우체국예금·보험에관 한법률)	관련규정 없음	관련규정 없음
농협금융업무* (농업협동조합법)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 여는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 을 적용 (제11조제1항)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 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배제 (제12조제1항)
수협금융업무* (수산업협동조합법)	중앙회의 신용사업에 대하 여는 은행법 및 한국은행법 을 적용 (제11조제1항)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 하여는 보험업법 적용배제 (제12조)
신협금융업무 (신용협동조합법)	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은행법 제2조 및 한국은행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임(제6조제3항)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 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적용 배제 (제6조제1항)
새마을금고금융업무 (새마을금고법)	연합회의 신용사업 부문은 은행법 제2조 및 한국은행 법 제11조에 따른 하나의 금융기관임(제6조제1항)	금고와 연합회의 사업에 관 하여는 보험업법 적용배제 (제6조제2항)

주 : * 은행법에서도 금융기관으로 인정(은행법 제5조)

2. 금융상품과 금융업에 대한 정의측면

금융겸업화의 진전으로 다른 금융상품 또는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동
 일상품 및 업무에 대한 차별규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규제 형평성면에서

33) 사건으로는 국가가 민간사업자와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자율시장기
 능의 실패가 전제되지 않은 모든 정부의 직접시행 금융업무는 중단하거나 민영화
 하여야 한다고 본다.

가능적으로 동일한 상품과 업무에 대해서는 동일규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동일기능 동일규제정책’을 자본시장통합법 제정과정에서 정부가 발표한 바 있다. 동일기능 동일규제 차원에서 금융업 법률체계의 문제점은 금융상품과 금융업무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가. 금융상품 정의체계의 불일치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업법들의 규정을 보면, 보험업법과 은행법에서는 보험상품과 은행상품에 대한 포괄적 정의는 없는 반면,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이 포괄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적 정의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은 모두 금융투자상품으로 일단은 자본시장통합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다만,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처분 권한(「신탁법」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처분 권한을 제외한다)이 부여되지 아니한 신탁(이하 “관리신탁”이라 한다)의 수익권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 또는 은행상품이라도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적 정의에 해당하면 일단은 금융투자상품의 영역에 해당하게 된다. 이는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이전에 포괄적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개별금융업 법률들이 다른 금융상품의 영역까지 규정하지 않은 것과 비교할 때 금융통합법 체계로의 일보 전진이라고 주장하나, 상대적으로 포괄적 정의를 갖지 못한 보험업법과 은행법은 법해석상 금융상품에 대한 영역주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금융투자상품은 투자기능에 따른 투자성 기준으로만 정의하고 있으나, 금융상품전체를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렇다고 금융상품을 구분하는 상호배타적이면서 포괄적(mutually exclusive and inclusive)인 기준을 제시하는 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아직은 해외사례중 부분금융통합법 체계에서 포괄적 정의와 투자성 기준과 같은 단일기준으로 보험, 은행 또는 투자상품의 적용대상범위를 규정하는 사례를 보지 못했다.

우리나라 금융상품의 분류에 대한 포괄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투자상품은 포괄적 정의를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적용대상 금융상품을 열거방식만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과 은행법의 정의방식의 차이가 존재하며, 그 차

이로 인하여 합리적인 금융상품의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첫째, 보험업법과 은행법에서 열거되지 않은 신상품이 출현할 때 투자성 요건이 충족하면 모두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해야 하는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열거되지 않은 투자성이 있는 보험과 은행상품이 출현하는 경우 모두 금융투자상품으로 일단 분류하게 된다.

둘째, 중첩성이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열거 우선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 투자성과 위험보장성을 모두 가진 금융상품은 금융투자상품이 될 수도 있고 보험상품이 될 수도 있으므로 시기적으로 먼저 해당법률에 열거하면 해당금융상품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첩성상품 출현에 대비한 분쟁해결 또는 조정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나. 금융업 정의의 한계

금융회사들이 영위하는 해당금융업은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외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보험업, 은행업 및 금융투자업을 명확히 구분하고 해석하기란 쉽지 않다.

은행업 정의에서는 제한적 자금중개기능(예금의 수입 등의 조달자금으로 대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금융투자업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 등의 기능으로 목적과 기능을 정의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다.

보험업은 보험사고에 대한 약정급여의 제고 및 손해보상을 약속하고 보험료를 수수하는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다. 은행과 보험의 업정의를 비교할 때, 은행업의 정의는 은행이 고객의 자금을 받아 대출에 운영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보험업은 보험상품을 언급하지 않고 직접 정의함에 따라 보험상품 중심으로 업정의를 보장기능 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험료를 수수하는 핵심적 기능으로만 정의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계약체결의 대리·중개기능 및 계약관리기능과 수수한 보험료를 보험금으로 지급할 때까지의 대출,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매 등 자산운용업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은행의 예금수입과 보험회사의 보험료수입은 결과적인 자금의 유입은 동일하지만 그 대가로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르다. 은행은 채무증서 발행으로 원리금의 부담을, 보험은 약정급여의 제공 또는 손해의 보상을 제공한다. 보험금 이외에 보험회사가 계약체결을 근거로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해약환급금, 미경과보험료 환급 및 무사고환급 등도 명확하게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금융투자업의 업정의에서도 금융회사들의 현실적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금융투자업은 6개의 열거된 금융투자업을 정의하면서 금융상품의 취급(매매, 중개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집단투자업과 신탁업은 취급업무를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6개의 금융투자업에 대한 정의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 또한, 보험회사와 은행이 이미 취급하고 있는 신탁업을 금융투자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집단투자업에 대한 보험회사의 경영도 부분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향후 금융겸업화 정책에서 금융투자업의 고유업무와 겸영업무의 분류기준에도 혼란이 예상된다.

다. 경영 및 부수업무 규정 및 범위의 불균형

금융회사들은 법률이 정한 고유업무이외에도 정책적으로 허용된 경영 및 부수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경영 및 부수업무는 법령에서 해당업무를 명시적으로 열거하고 기타 유사업무는 하부규정에 열거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다. 다만, 은행법에서는 부수업무(은행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하여 예시없이 재정경제부령에 전부 위임하고 있어 모든 부수업무를 재정경제부령에 열거하면 부수업무로 취급할 수 있다.

보험업 부수업무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보험업 부수업무는 없어 실제 보험업 부수업무는 법령에 열거하는 방식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반면, 자본시장통합법의 부수업무에 대한 규정방식은 네거티브방식으로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제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①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 ②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금융투자업의 영위에 따른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③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감독위원회에 7일전 신고한 후 부수업무로 영위할 수 있다.

은행업무의 부수업무도 보험업과 달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상당히 완화된 상태이고, 하부규정에서 산업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는 체계이다. 또한, 자본시장통합법 제40조 제1호에서 금융투자업의 경영업무로 정하고 있는 보험대리점 업무를 은행은 부수업무로 정하고 있는 점과 파생상품거래의 취급을 경영업무가 아닌 부수업무로 규정하는 점 등은 체계적 일관성도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표 IV-2> 금융업별 경영 및 부수업무 법령규정 현황

구 분	경영 및 부수업무
경영 업무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보험회사가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한 업무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당해 보험회사 보유자산의 관리업무에 한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업으로서 그 업무의 성격상 보험회사가 경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가한 업무 ·신탁회사가 영위하는 업무 (법제11조제1항 제1호·제2호 및 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항)
보 험 부수 업무	- 보험업과 관련된 업무(다른 보험회사를 위하여 그 보험업에 속하는 거래의 중개 또는 대리를 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보험수리업무, 보험사고 및 보험계약 조사업무, 보험에 관한 연수·간행물·도서출판업무, 보험업과 관련된 전산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대여 및 판매 업무, 보험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업무, 자동차와 관련된 교육, 상담 그 밖의 부가서비스 업무, 재공제 업무(영위하고 있는 보험종목과 관련된 재공제 업무에 한한다) 등 - 보험회사가 소유하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 등을 활용하는 업무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대여금고 업무, 수입인지·복권·상품권 등의 판매대행 업무, 기업 및 보험계약자에 대한 상담 및 위험관리 업무, 금융·경제관련 조사 및 연구업무, 다른 금융기관의 업무종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수행방법 또는 업무수행을 위한 절차상 본질적 요소가 아니면서 중대한 의사결정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위탁한 업무, 기업의 후생복지에 관한 상담 및 사무처리 대행업무, 보험회사의 설비 등을 활용한 광고대행 업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승인 또는 등록 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자산운용회사의 업무 및 판매회사의 업무 <p>(법제11조제1항 제3호 및 법시행령 제16조제3항)</p>
구 분		경영 및 부수업무
인 행	경영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무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업무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회사의 업무 - 기타 은행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무 (법시행령제18조의3)
	부수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은행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무 (법시행령제18조의3 제4호)
금 용 투 자	경영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인가·허가·등록 등을 요하는 금융업무 중 「보험업법」 제91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업무 또는 보험중개사의 업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업무 - 국가 또는 공공단체 업무의 대리 - 투자자를 위하여 그 투자자가 예탁한 투자자예탁금(제74조제1항의 투자자예탁금을 말한다)으로 수행하는 자금이체업무 - 그 밖에 그 금융업무를 영위하여도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
	부수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 -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업무의 영위를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p>1.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는 경우</p>

	2. 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금융투자업의 영위에 따른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	--

3. 주요이슈를 통해 본 문제점

가. 투자성 금융상품의 분류

자본시장통합법은 기본적으로 투자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다만, 명시적으로 적용제외하고 있는 ①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와 ②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처분 권한(신탁법 제42조 및 제43조³⁴⁾에 의한 처분권한은 제외)이 부여되지 아니한 신탁의 수익권에 한해서는 투자성이 있지만 기간의 단기성과 수탁자의 현실적 의무이행성³⁵⁾을 고려하여 적용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 및 은행상품이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할 것인지는 투자성 여부에 달려 있다. 투자성에 대한 자본시장통합법상 기준은 ‘투자원본이 미래 투자회수금을 하회할 위험으로 정의하고 있어 대부분의 은행상품은 원본보장이 되므로 큰 상관은 없으나, 보험상품 대부분은 일단은 투자성이거나 투자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의 보험상품이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투

34) 신탁법 제42조 (수탁자의 비용, 손해보상청구권) ①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당한 조세, 공과기타의 비용과 이자 또는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과실없이 받은 손해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서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전항의 비용 또는 손해의 보상을 청구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단, 수익자가 특정되어있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수익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 (보수청구권) 전조의 규정은 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경우에 그 보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수탁자가 수익자로부터 보수를 받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35) 퇴직연금신탁과 같이 자산운용계약과 신탁계약이 분리되는 경우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과 계약이행상의 의무를 수탁자가 지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자원본과 투자회수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정함으로써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될 보험상품의 범위를 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체계로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되었다. 원본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판매수수료 뿐 아니라 소멸성 보장보험료, 기타 계약관리 등의 사업비 등 미래의 반환을 위하여 적립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에서 이를 명확히 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은 보험업법의 규제대상인 보험상품의 범위가 자본시장통합법시행령에 좌우되는 불안정한 체계이다.

투자회수금에 대해서도 '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계약해지로 인한 비용은 회수금에 포함할 수는 있지만 투자원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지수수료이외에 도산시 회수불능금액, 세금 등을 회수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문제와 체계의 불안정성은 동일하다.

투자원본과 투자회수금을 법시행령에서 적절하게 규정하는 경우 전통적 보험상품인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보험은 적용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변액보험이 전통적 보험상품이지만 투자성이 있어 금융투자상품의 분류가 필요하다고 주장되는 변액보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원본과 회수금의 기준을 보험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더라도 '원본 > 회수금' 될 위험이 있는 보험상품이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볼 때, 변액종신 및 변액이보험의 경우에는 보장성보험료가 원본에서 제외되는 경우 적용제외가 가능하고, 최저보장 변액연금의 경우에도 원본이 보장되므로 적용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원본 일부보장형 변액연금과 변액유니버설보험이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투자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표 IV-3> 변액보험의 종류 및 내용 비교

구분		상품내용	운영현황
변액종신 및 변액CI		- 보험료 : 보장보험료 - 회수금 : 사망보험금 및 정액보장금액 담보	- 자산운영 초과수익이 있는 경우 사망보험금 또는 정액보험금을 증액만 가능
변액연금	최저보장형	- 보험료 : 저축보험료 - 회수금 : 원본이상의 연금지급액 *원본보장보험료 있음	- 자산운영시 주식투자(50%정도)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원본은 보장
	일부보장형	- 보험료 : 저축보험료 - 회수금 : 원본이하의 일정비율 보장 또는 실적에 따른 연금지급액 차등 *원본보장보험료 있음	- 자산운영 수익악화시 원본의 일정비율까지만 보장(최저보장형 변액연금 판매사에 한해 판매가능)
변액유니버설		- 보험료 : 수시납 저축보험료 - 회수금 : 실적에 따른 만기적립액 지급	- 주식투자비중이 높은(90%까지)경우도 가능한 투자성이 높은 보험상품임 - 다만, 사망보험금 담보는 기납입보험료이상으로 하여야 함

그러면 보다 근본적 문제로 투자성이 있는 보험상품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해야 할 이유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를 검토해 보자.

자본시장통합법 제77조 투자성 있는 예금·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 주로 영업행위규제에 대하여 자본시장통합법의 관련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포괄적 금융투자상품의 정의를 통하여 포함된 보험 및 은행상품은 자본시장통합법의 영업행위규제를 적용하여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적합성 원칙을 제외한 대부분의 규제는 이미 보험업법에서 근거 규정이 있거나 현재로서도 규제가 가능하여 규제차익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IV-4> 투자성 보험·예금에 대한 자본시장통합법 적용규정

구 분		적용대상 조문
자본시장통합법 제4장 영업행위 규칙 제1절 공동 영업행위 규칙	제1관 신의성실의무 등	제37조(신의성실의무)
	제2관 투자권유	제46조(적합성 원칙 등) 제47조(설명의무) 제48조(손해배상책임) 제49조(부당권유의 금지)(제3호 방문전화 판매 제외) 제50조(투자권유준칙) 제51조(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등) 제52조(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제3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제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제55조(손실보전 등의 금지) 제57조(투자광고)

나. 장외파생상품과 보험상품

자본시장통합법 이전에는 장외파생상품이 특정금융권역에 독점적 권한이 부여된 금융상품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파생상품의 범위도 일정범위로 제한되어 있었다.

종전의 장외파생상품규제와 관련한 법률과 대상범위는 다음과 같이 날씨 및 신용위험을 제외하고 있었다.

<표 IV-5> 자본시장통합법 전후의 장외파생상품 정의 비교

구분	정의 내용
간접투자 자산운용 법령	- '장외파생상품'이라 함은 유가증권시장등의 밖에서 통화·투자증권·금리·간접투자증권·부동산·실물자산 또는 통화·투자증권·금리·간접투자증권·부동산·실물자산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법제2조제9호) - 법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장내 파생상품거래중 거래의 결과가 기초자산의 신용위험과 관련된 거래(기초자산과 관련된 채무불이행, 신용등급 하락 등 거래당사자간에 약정한 사유에 의한 신용사건 발생시 거래당사자간에 계약이행의 권리 또는 의무가 발생하는 거래를 말한다)를 제외한 거래를 말함(법시행령 제10조)
자본시 장통합 법 이전	-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및 선물시장 밖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장외파생금융상품거래'로 정의 가. 유가증권의 가격·이자율이나 이를 기초로하는 지수의 수치 나. 통화 또는 일반상품(선물거래법상 일반상품)의 가격이나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의 수치 다. 신용위험의 지표 (법시행령제36조의2제1항 제1의2호)
선물 거래법령	- 선물거래의 대상범위 정의 1.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일반상품) 2. 일반상품외의 것으로서 통화·증권·채권·용역대가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선물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자율 기타의 조건을 표준화한 것을 포함)(금융상품) 3. 제1호 및 제2호에 속하는 것의 가격·이자율 등을 이용하여 수치화한 것(이하 "지수"라 한다) (법제2조)

구 분	정의 내용
자본시장통합법 이전	- '파생금융거래'라 함은 금융선물시장에서 행하여지는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법 제3조 제1항 제17호) - 법 제3조제1항제17호에서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금융선물시장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다음의 거래를 말함 1. 지급수단·증권·채권 기타 거래될 수 있는 상품을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수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로서 전매 또는 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가격과 전매 또는 환매시의 가격과의 차액을 수수하여 결제할 수 있는 거래 2. 상품등의 가격 또는 이자율과 이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를 기준으로 약정된 수치를 미리 정하고 장래의 일정한 시기의 당해 지수등의 수치와의 차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 3. 장래의 일정기간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상품등을 교환하거나 지수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4.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다음 각목의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당사자의 일방에게 부여하고 그 권리를 부여받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가. 제1호 내지 제3호의 거래 나. 상품등의 매매거래 다. 지수등을 기준으로 약정된 수치의 차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 5.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용위험과 연계한 거래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 (법시행령제8조)
자본시장통합법	- '파생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함 1.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

구분	정의 내용
자본시장통합법	<p>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p> <p>3.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외파생상품'이란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을 말함(법제5조) - '기초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금융투자상품 2.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3.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한다) 5.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법제4조제10항)

금융회사별 장외파생상품의 취급범위를 보면, 보험회사만 장외파생상품의 취급이 금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증권회사는 2005년 3월 28일 증권거래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증권회사가 겸업으로 취급할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의 대상에 '신용위험의 지표'를 추가로 허용하였고 은행의 부수업무로 허용된 장외파생상품거래도 자기거래인지 타인거래인지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으나 허용근거를 마련하고는 있다. 일본의 경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논쟁을 불식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부수업무로 금융 등 파생금융상품을 폭 넓게 허용하고 있음은 참고할 만하다.

<표 IV-6> 금융회사별 장외파생상품의 취급범위

구 분		취급대상 장외파생상품의 범위
보험 회사	한국	- 없음
	일본	- 금융등파생금융상품거래 금리, 통화의 가격, 상품의 가격, 기타 지표의 수치 로서 사전에 당사자간에 약정된 수치와 장래 일정 시기에 있어서 현실의 당해지표의 수치의 차이에 따라 산출된 금전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 또는 이들과 유사한 거래(법제98조제1항)
은행		- 파생상품거래. 다만, 일반상품파생상품거래는 법인 고객의 위험회피를 위한 경우에만 허용. (재정경제부 고시: 은행업의 부수업무)
금융 투자 회사	자통법이전	- 허용된 장외파생상품 전부 통화, 금융상품, 일반상품 및 신용위험의 지표
	자통법이후	- 허용된 장외파생상품 전부 통화, 금융상품, 일반상품, 신용위험과 그 밖에 자연 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 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 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날씨위험 포함)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장외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하면서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범위를 날씨, 신용위험 등을 포함하여 폭 넓게 규정함에 따라 거의 모든 기초자산의 장외파생상품도 금융투자상품으로 분류되게 되었다³⁶⁾.

장외파생상품업무의 성격은 증권회사도 본업이 아닌 경영업무로 취급하고 있고 은행도 제한적으로 부수업무로 취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특정금융회사의 고유업무가 아님은 분명하므로 보험회사의 경영업무로도 허용될 수 있는 성격의 업무이다. 특히, 날씨 및 신용파생상품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날

36) 자본시장통합법 제4조 제10항에서 파생상품 기초자산의 범위를 1. 금융투자상품, 2.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3.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신용위험(당사자 또는 제삼자의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또는 채무재조정 등으로 인한 신용의 변동을 말한다), 5. 그 밖에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

씨보험과 보증보험과 본질적 기능이 유사하여 경영업무로 허용하는 경우 효율적 업무수행도 가능한 분야이다.

날씨파생상품의 보험상품적 성격에 대하여 뉴욕주 보험청은 날씨파생상품은 사고의 우연성을 지급기준으로 하는 것은 동일하나 구입자의 손해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발행자의 지급책임이 발생하므로 보험상품은 아니지만 특별한 상황³⁷⁾에서 보험상품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주장³⁸⁾하고 있으며, 전미보험감독관협회(NAIC)는 날씨파생상품이 상품구조적 측면에서 보험상품은 아니지만 본질적인 구매목적은 보험상품과 동일하게 담보위험(perils)으로부터 발생하는 재정손실의 위험(risks)을 분산하는 것임에도 보험규제의 회피를 위해 비보험금융상품(non-insurance products)으로 포장하고 있으므로 적정준비금의 적립 및 솔벤시규제 등을 통한 일반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보험상품으로 규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⁹⁾.

<표 IV-7> 미국의 날씨보험 및 날씨파생상품 상품구조 비교

구 분	날씨보험 (Weather Insurance)	날씨파생상품 (Weather Derivatives)
목 적	날씨로 인한 손해 보상	날씨로 인한 수익상실 또는 투기적 이익 추구
보상형태	실손보상	지수변동에 따른 정액보상
보상한도	보상한도 존재	지급한도 설정 가능
상품가격	보험료	옵션프리미엄등
보상기준	보험사고의 발생	행사가격 또는 지수에 도달
수 익 자	피보험자	상품구매자
손해사정	필요	불필요
전가시장	전통적 재보험시장	자본시장

37) 파생상품의 특성과 구매자의 이해 및 책임관계의 특정 상황. 즉, 날씨위험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이 날씨파생상품을 구매하여 날씨위험으로 실제 손해도 발생하고 그런 손해를 보상할 정도의 지급을 받는 경우에 기능적으로 보험과 차이는 없음.

38) 뉴욕주보험청, Weather Financial Instruments, Circular 2000. 2. 15.

39) 전미보험감독관협회(NAIC), "Weather Financial Instruments(Temperature): Insurance or Capital Markets Products(09/16/03)".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또다른 논쟁대상은 신용파생상품이다. 신용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의 신용상태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파생상품으로 특정 신용사건 발생시 지급을 약속하는 것으로 채무자의 지급불이행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보상하는 신용보험 또는 은행등이 신용공여의 수단으로 제공하는 지급보증업무와 신용리스크의 이전이라는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신용파생상품의 경우에도 날씨파생상품과 마찬가지로 이유로 보험상품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실손보상원칙이 항상 준수되는 것이 아니므로 한계가 있다. 또하나의 논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보험회사는 신용파생상품을 보장매도자로 취급할 수도 없고 자산운용으로도 투자할 수도 없다. 보험회사에는 장외파생상품의 취급이 경영 또는 부수업무로 허용되지 않았고 투자대상으로도 허용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면적인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금지조항⁴⁰⁾에 따라 보험상품으로 허용된 것이 아닌 한 채무보증이 금지되므로 신용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가 제한되고 있다.

다. 채무면제·유예계약(DCCDS)과 보험상품

채무면제·유예계약(DCCDS)란 채무면제계약(DCC: debt cancellation contract) 및 채무유예계약(DSA: debt suspension agreement)을 통칭하는 것으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차입자에 대하여 사망, 재해 사망, 신체상실, 장애, 실업, 가사 휴직, 경조사, 입원, 병역, 자연 재해 등의 일정한 사건(protected event)이 발생하면 채무상환을 면제 또는 유예해 주기로 차입자와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간에 약정을 체결하고, 차입자는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대출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금융상품이다.

채무면제·유예계약에 대한 국내 논쟁은 최근 일부 할부금융회사와 신용카드회사가 동 상품을 취급하면서 촉발되었다. 금융감독당국에서는 보험업법

40) 보험회사는 타인을 위하여 그 소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의 보증을 할 수 없다. 다만,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의 보증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보험업법 제113조).

위반임을 통보하고 업무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⁴¹⁾. 보험회사가 아닌 할부금융 회사등이 채무면제·유예계약을 취급하는 것이 보험업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채무면제·유예계약이 보험상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채무면제·유예계약의 서비스의 성격이 보험상품의 성격과 다르다는 주장과 주업무인 대출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라는 주장도 있다. 보험상품이 아니라는 주장은 차입자의 사망 등 전형적인 우연성이 있는 보험위험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전가한다는 점에서 보험상품의 성격과 다르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부수업무라는 주장도 다른 업권의 고유업무를 법적 근거도 없이 부수업무라고 주장하는 것은 금융검업화의 취지와 통상적 경영업무를 규정하는 금융법률체계에도 맞지가 않다.

또한, 채무면제·유예계약이 현행처럼 운영될 경우 소비자보호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다.

첫째, 보험계약에 아니므로 가격 및 상품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다. 보험가격 및 상품은 보험업법에 의한 감독을 받지만 채무면제·유예계약의 수수료 등은 대출자가 차입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차입자는 협상력이 약한 상태에서 수용여부만 결정할 수 있어 우월적 지위남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

둘째, 판매과정상의 불공정행위 금지에 대한 장치가 없다. 보험상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및 보험회사 배상책임 등 보험업법에 구체적 금지행위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상품이 아닌 채무면제·유예계약에 대한 서비스의 성격,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하거나 알려줄 법적 의무가 없다.

셋째, 금융회사의 채무면제·유예계약에 대한 우려가 있다. 대출계약과 차입자의 사망의 관계를 볼 때, 차입자 사망과 대출계약은 무관하므로 차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대출채권은 유효하고 다른 차입자의 재산에 채권회수를 시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면제·유예계약을 한 경우에는 대출채권을 금융회사 스스로 면제 또는 유예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채무면제·유예계약으로 인하여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의 회수권한을 스스로 포기함으로써 그 비용을 부담해야

41) 금융감독원 보감조9123-00583, “보험상품과 금융상품의 결합판매에 따른 유의사항”, 2005.8.19.

한다.

미국 뉴욕주 법무국장(Attorney General)이 처음으로 채무면제계약에 의견을 피력한 것은 1964년의 일이다. 내셔널뱅크(national bank)가 차입자와 체결한 차입자 사망시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에 대하여 해당계약은 보험계약이고 내셔널뱅크는 보험회사의 지위에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⁴²⁾. 채무면제 계약에 대한 법무국장의 의견은 채무유예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이에 대한 통화감독당국(OCC: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의 의견은 내셔널뱅크의 명시적 권한인 대출업무에 부수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1971년에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련규정(12 CFR Part 37)을 제정하였다. 1999년 금융개혁법인 그램-리치-블라일리법(the Gramm-Leach-Bliley Act)의 제정으로 또한번의 논란이 있었다. 동법 제302조는 내셔널뱅크에 허용하는 보험상품 취급범위를 규정하면서 허용된 보험상품으로 범위를 한정 하였다. 허용된 보험상품의 범위는 1999년 1월 1일 현재 통화감독당국이 내셔널뱅크가 제공할 수 있다고 서면으로 결정한 상품 또는 내셔널뱅크가 실질적이고 합법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상품과 최종적인 법원판단으로 통화감독당국이 허용한 내셔널뱅크의 상품취급에 대하여 반대의 결정이 없는 경우 등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LBA 제104조(a)는 보험에 대한 기능적 규제자로 주규제를 인정하고 있고 채무면제·유예계약이 주보험법하에서 보험상품으로 인정되는 한 주보험감독당국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2002년 4월 2일 미국 뉴욕주보험청이 제시한 의견은 채무면제·유예계약을 발행한 내셔널뱅크에 대하여 보험인수와 관련한 보험법규를 적용하는 것이 내셔널뱅크의 업무를 금지 또는 제약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험판매와 관련하여 보험규제의 적용은 GLBA 제104(d)(A)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주보험당국이 예금금융회사(depository institution)의 허용된 보험판매업무를 금지하거나 심하게 방해(prevent or significantly interfere)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할 수도 있어 개별건별로 판단할 것이라고 하였다.

2004년 4월 2일 미국 뉴욕주은행청은 채무면제·유예계약에 대한 입장을

42) 1964 Op. Atty. Gen. 30.

분명히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행하였다. 그 가이드라인에서는 소비자가 해당 상품의 구입에 대한 성격, 비용 및 관련위험을 이해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금융회사는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해당금융회사가 보험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채무면제·유예계약을 제공하는 주체는 뉴욕주보험법과 관련법규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 채무면제·유예계약에 대한 의견은 채무면제·유예계약의 체결은 보험사업에 해당하지만 규제에 대해서는 보험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라. 연금 및 투자상품의 취급

생명보험의 기본적 효용은 조기사망(premature death)에 따른 인간생애가치(human life value)의 상실을 보장하는 것인 데 반해, 연금은 장수(longevity)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완하는 것이다. 한편, 개인재무관리(personal financial management)의 측면에서 생명보험제도는 필요자금을 생성하는 방법이고, 연금제도는 축적된 자금을 체계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 것이다. 생명보험제도는 소득을 생산하는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소득이 중단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미래에 필요한 자금을 일시에 만드는 기능을 하고, 연금은 소득생산이 중단된 연금수익자에게 축적된 자금을 활용하여 중단된 소득을 체계적으로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금제도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자산형성과 축적된 자산의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노후에 안정적 경제생활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연금의 기능은 평균수명이 급격히 늘어나는 국내에서도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금융회사들의 연금상품 취급도 활발해지고 있다.

보험상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연금은 생명보험과 마찬가지로 우연한 사고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의 보장기능을 담당하므로 보험상품이다. 연금보험의 보험사고는 생존으로 생명보험의 보험사고인 사망과 다르다고 볼 수도 있으나, 우연한 사고의 발생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 뿐 아니라 미발생도 우연한 사고의 발생으로 보기⁴³⁾ 때문에 생존보험인 연금도 보험상품에 해당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연금은 생존보험이지만 특별히 법령으로 정하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하여는 사회안전망 구축차원에서 생명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손해보험회사, 은행, 우체국, 자산운용 또는 투자신탁회사 등도 해당법령에서 정하는 연금상품의 취급을 허용하고 있다⁴⁴⁾.

생명보험회사 뿐 만 아니라 손해보험회사, 은행, 투자신탁회사, 우체국 등이 동일한 기준으로 취급할 수 있는 연금상품의 범위는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세제지원개인연금계약, ③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에 의하여 운영되는 퇴직연금 등이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은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⁴⁵⁾.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판매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세제지원개인연금계약은 연금저축과 세제적용등과 요건에서는 일부 차이가 있으나⁴⁶⁾,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이라는 상품성격은 동일하다.

결과적으로 생명보험회사 이외에 손해보험회사와 다른 금융회사가 취급하

-
- 43) 'Fortuitous event' means any occurrence or failure to occur which is, or is assumed by the parties to be, to a substantial extent beyond the control of either party(미국 뉴욕주보험법 제1101조(a)(2)).
- 44) 선진형 노후소득보장체계인 3층보장론(three pillar system)에 입각한 공적연금에 의한 사회보장, 퇴직(기업)연금에 의한 기업보장 및 개인연금에 의한 자기보장의 3층보장체계에서 공적연금을 제외한 퇴직연금(2층보장)과 개인연금(3층보장)의 확대를 위하여 관련법령에 의하여 취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확대하고 있다.
- 45) 연금저축의 요건으로 ① 취급기관을 신탁회사,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우체국보험, 농협 및 수협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간접투자회사 등으로 제한하고, ②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일 것, ③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④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불입할 것, ⑤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후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등(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의2).
- 46) 세제적격개인연금저축의 요건은 ① 취급기관을 신탁회사, 자산운용회사, 보험회사, 우체국보험, 농협 및 수협조합 등으로 제한하고, ② 가입대상이 만 20세 이상일 것, ③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④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불입할 것, ⑤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후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 것 등(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는 개인연금은 급부금이 분할하여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나, 저축형태로 관리되며, 생존확률이 보험료 또는 급부금의 계산에 사전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확정연금급부의 형태이다. 퇴직연금은 자산관리계약의 일종으로 생존확률이 반영된 생존보험으로서의 연금과는 구분된다.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우체국, 농협·수협공제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세제적격개인연금의 종류는 자산운용측면에서 수익률 부리방법에 따라 확정금리형⁴⁷⁾, 금리연동형⁴⁸⁾, 실적배당형⁴⁹⁾ 이 있고 연금지급의 형태에 따라 확정형과 종신형으로 구분된다.

<표 IV-8> 세제적격개인연금 취급기관별 상품 비교

구 분	은행(농수협 중앙회포함)	투신사	생보사	손보사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수 익 률	실적배당	실적배당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	금리연동형 금리확정형	금리 연동형
적립방식	자유식	자유식	정액식	정액식	정액식	정액식
연 금 지급방식	확정형	확정형	확정형, 종신형	확정형	확정형, 종신형	확정형, 종신형
충도해지	원금 및 일정이자 지급	원금 및 일정이자 지급	일정기간 불입해야 원금확보	일정기간 불입해야 원금확보	일정기간 불입해야 원금확보	원금 및 일정이자 지급
형 태	신탁	신탁	보험	보험	보험	보험
예금보호 여 부	보호	비보호 ¹⁾	보호	보호	비보호 ¹⁾	보호 ²⁾

주 : 1)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안전기금을 적립하여 보호
 2)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정부기관으로서 지급이 보증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

- 47) 계약시 연금적립금 및 연금액이 확정되어 있으며, 예정이율을 보장하고 있음.
- 48) 공시이율에 따라 연금적립금 및 연금액이 변동되는 형태의 보험.
- 49) 투자수익에 따라 연금 적립금 및 연금액이 연동되는 형태의 보험.

의 방법으로 자산관리하는 퇴직연금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에 의한 자산관리업무를 체결하여야 하고, 퇴직급여제도에는 연금형태로는 확정급여형⁵⁰⁾과 확정기여형⁵¹⁾이 있고, 저축계좌형태의 개인퇴직계좌가 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그리고 개인퇴직계좌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을 말한다.

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에 속하는 자산의 관리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담당하며,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 수행하는 자산관리업무란 계좌의 설정 및 관리, 부담금의 수령,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의 운용지시의 이행, 급여의 지급 등을 말한다⁵²⁾. 동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개인퇴직계좌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은 신용등급 등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금융기관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운용방법,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그 밖에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등을 말한다.

퇴직연금은 계약체결의 방법이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이 가능하며, 자산관리방법에 따라 확정급부형 또는 확정기여형 연금과 개인퇴직계좌(저축계좌)로 구분되지만, 실제 자산운용의 결과에 대한 책임과 권리는 사용자 또는 수익자에 속하는 것으로 자산관리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
- 50)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제도는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연금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되며,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결정 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은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하며, 사용자가 적금금 운용방법을 선택하고 위험도 부담한다.
- 51)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제도는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택하고 위험도 부담하고,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영성과 및 그에 따른 퇴직 후 연금 급여액의 변동위험을 직접 부담한다.
- 5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표 IV-9> 퇴직연금제도 종류별 비교

구분	확정급여형 (DB,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 (DC, Defined contribution)	개인퇴직계좌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시 지급할 급여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약정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근로자 퇴직시 사용자는 사전에 약정된 퇴직급여를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이 부담할 기여금 수준을 노사가 사전에 확정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하면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장이전시 퇴직연금 유지를 위한 연금통산장치 또는 10인 미만 사업체적용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 ▪퇴직일시금 수령자 가입시 동 일시금에 대해 과세 이연
기업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기업부담 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임금의 일정비율로 확정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없음 (다만, 10인미만 사업체는 DC와 동일)
퇴직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기간과 퇴직시 임금 수준에 따라 결정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운용실적에 따라 퇴직급여 수준이 변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동
제도간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려움 (퇴직시 IRA로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장이동시 이전 용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이전 용이
최적가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산 위험이 없고, 정년 보장 등 고용이 안정된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봉제 도입기업 ▪채불위험이 있는 기업 ▪직장이동이 빈번한 근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일시금 수령자 및 소규모 기업 근로자